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612호
2.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3. 제출일자 : 2019. 3. 29.
4. 회부일자 : 2019. 4. 3.

II. 개정이유

- 2019년 9월 1일자로 서울특별시립 특수학교 2개교를 신설하고, 기 설치된 서울특별시립학교 3개교의 위치를 정정하고자 함

III. 주요내용

1. 특수학교 신설
 - 서울서진학교 (강서구 양천로55길 22)
 - 서울나래학교 (서초구 염곡안1길 25)
2. 위치 정비(도로명주소로 변경 및 정비)
 - 위치 정비 3개교 (초 1교, 방송통신고 1교, 유치원 1원)

IV. 참고사항

1. 관계법령

가. 「교육기본법」 제11조(학교 등의 설립)

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관장사무)

2. 예산조치 : 해당없음 (비용추계서 [별첨 2])

3. 관련부서 협의 : 해당없음

4. 기 타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1]

나. 입법예고(2019.2.27. ~ 3.18.) 결과 : 제출의견 없음

다.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3월 29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612호로 제출되어 2019년 4월 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9월 1일자로 특수학교 2개교를 신설하고, 3개교의 도로명 주소를 변경하는데 따른 후속적인 입법 조치를 위해 제출된 것입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특수학교 신설의 건

- 동 개정조례안에 제출된 특수학교 2개교는 강서구에 위치한 서울서진학교와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나래학교로써 금년 9월 1일에 개교하기 위한 것인바,

동 개정조례안은 개교 예정인 특수학교 2개교를 동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서 법적 취지 및 절차상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다만, 서진학교는 최초 2016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되었으나, 지역 주민과의 갈등 등으로 인해 개교시기가 2019년 9월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일부 지역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 학교 설립에 난항이 계속되고 있는바¹⁾,

1) 송진식 기자, '엄마들 무릎 꿇어 얻은 '서진학교'해 넘기나', 경향신문, 2019.3.26. 기사 참조
서울 강서 장애 특수학교, 주민항의·민원에 공사 차질, 개교일 3월→9월→11월로 세 번째 연기될 가능성 커, 교육청 "9월 일부개교"에 학부모 "누구를 먼저"난색.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지역주민들과의 원활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서진학교가 2019년 9월에 차질 없이 개교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특수학교 설립 경과 [붙임] 참조).

- 한편 서진학교와 나래학교는 서울시교육청의 교명제정심의위원회에서 이미 널리 알려진 학교명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교명제정심의위원회-2, 2019.2.26.)되었는바, 교명과 관련하여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1] 학교명 심의 결과

가칭 학교명	교명제정심의위원회	
	선정명칭	심의일
서울서진(西眞)학교	서울서진(瑞進)학교	2019.2.26
서울나래(나래)학교	서울나래(나래)학교	2019.2.26

나. 위치 정비의 건

- 동 개정조례안에 제출된 위치 정비의 건은 총 3개교로서 학교 이전 및 신설시 잘못 반영된 도로명 주소 및 위치를 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그동안 교육위원회에서는 도로명 주소 변경과 관련하여 잘못되어 있는 주소의 일괄정비를 수차례 지적하였으나, 여전히 동 조례에 위치가 잘못 표기된 학교가 적지 않은바, 서울시교육청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엄중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표-2] 조례안 미반영 주소 오류 학교

학교명	조례상 위치	실제 위치
서울향동초등학교	구로구 향동 160	구로구 연동로 178
서울북성유치원	서대문구 북아현로5나길 86-10	서대문구 북아현로 1나길 32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붙임] 특수학교 설립 경과

1. 서진학교

일자	내용
2016. 8.11.	공립 특수학교 신설 추진계획(안) 수립 (교육청)
2016. 8.31~9.30	강서 특수학교 설립 행정예고 실시
2016. 9.26.	교육감·강서지역 주민대표 면담 실시
2016. 12. 5.	가칭) 서진학교 설립계획 서울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통과
2016. 12.16.	가칭) 서진학교 설립계획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
2017. 1.18	강서지역 특수학교 설립관련 주민대표면담
2017. 1.23.	마곡지구 대체용지 관련 유관기관 협의
2017. 2. 6.	대체부지확보에 대한 서울시 회신
2017. 2. 9.	마곡지구 대체부지 확보검토 중단 요청 서울시의회 청원
2017. 2. 22.	서진학교 설립 관련 공진초 인근 비대위 교육감 면담
2017. 3. 3.	마곡지구 대체부지 확보검토 중단 요청 서울시의회 청원 본회의 채택
2017. 7. 6.	서진학교 설립 교육감·주민토론회 개최
2017. 9. 5.	서진학교 설립 교육감·주민 2차토론회 개최
2017.11.~2018. 1.	한강자이 반대 비대위 주민협의체 회의 실시(3회) - (1차) 11.13 (2차) 12.1 (3차) 18. 1.25
2018. 2.21.	서진학교 개교일정 변경(2019.3월→2019.9월)
2018. 3.26.	주민, 교육공동체 특수학교 설립추진 설명회
2018. 4. 5	서진학교 신설사업비 증액 결정(167억→220억)
2018. 5.18	서진학교 신설사업비 증액 중앙투자심사 완료
2018. 5.16	서진학교 신설 강서지역협의체 구성, 1차 회의 실시 - 강서지역협의체 : 다양한 강서지역 여론 수렴을 위한 협의기구 구성
2018. 5.24	서진학교 시공업체 선정 조달청 발주
2018. 6.18	가양 4,5단지 입주자대표 간담회, 서진학교 설립 협조 요청
2018. 6.20	강서지역협의체 2차 회의 실시, 주민편익시설 논의
2018. 6.29	서진학교 공유재산 관리계획 재심의 서울시의회 통과
2018. 6.29	서진학교 사업비 증액비용 추경예산 반영
2018. 7.25	서진학교 공사업체 선정
2018. 8. 7	서진학교 착공
2018. 9.4	서진학교 설립 합의 - 참석자 : 교육감, 김성태 국회의원, 손동호 비대위원
2018.11.30	비대위 면담 (비대위 요구사항 수용 불가)
2019. 2.22	비대위 면담 (펜스설치 협의)

2. 나래학교

일자	내용
2016. 11. 4.	강남·서초 특수학교 설립 행정예고
2016. 11.30.	강남·서초 특수학교설립 행정예고 종료
2017. 2. 7.	특수학교 설립관련 서초구청 협의
2017. 2.16.	특수학교 설립관련 서울시 협의(공원녹지정책과, 자산관리과)
2017. 2. 21.	나래학교 설립계획 자체투자심사 통과
2017. 4. 13.	나래학교 설립계획 중앙투자심사 통과 (조건부)
2017. 4. 27.	나래학교 설립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 용역계약
2017. 6. 14.	나래학교 설립 주민설명회 개최
2017. 6. 20.	나래학교 설립 서울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통과
2017. 8. 23.	나래학교 설계공모작 선정
2017. 9. 6.	나래학교 설립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 국토부 사전심사
2017.10.18.	나래학교 설립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018. 1. 2.	GB관리계획 변경 승인공고 (서울시)
2018. 2.21	나래학교 개교일정 변경(2019.3월→2019.9월)
2018. 3.26	주민, 교육공동체 특수학교 설립추진 설명회
2018. 4. 5	나래학교 신설사업비 증액 결정(171억→240억)
2018. 4. 6	나래학교 신설사업비 증액 자체투자심사 완료
2018. 4.17	나래학교 신설을 위한 언남초 철거 주민설명회
2018. 5.18	나래학교 신설사업비 증액 중앙투자심사 완료
2018. 5.25	나래학교 시공업체 선정 조달청 발주
2018. 6.29	나래학교 공유재산 관리계획 재심의 서울시의회 통과
2018. 7. 5	나래학교 신설 민관협의체 주민대표 면담
2018. 7.25	나래학교 공사업체 선정
2018. 8. 6	나래학교 착공
2018. 8.20	나래학교 공사진행 관련 주민대표 협의 - 협의사항 : 공사개시시간 지연 요청, 도로확장 요청
2018. 9. 5	나래학교 도로확장 관련 유관부서 협의
2018.12. 7	나래학교 진입로 및 주민시설 설치 주민·서초구청 협의
2019. 3. 7	나래학교 진입로 확장 관련 서울시 협의
2019. 3.15	나래학교 진입로 및 공공시설 설립 관련 서초구청 협의

관계 법령

교육기본법

[시행 2017.6.22.] [법률 제14601호, 2017.3.21., 일부개정]

- 제11조(학교 등의 설립)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설립·경영한다.
② 법인이나 사인(私人)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설립·경영할 수 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약칭: 교육자치법)

[시행 2018.1.1.] [법률 제11212호, 2012.1.26., 타법개정]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학예의 시설·설비 및 교구(教具)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起債)·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당해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